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595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다. 출산지원금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함.
(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제21조
- 나. 예산조치 : 2021년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예산 6,000천원 편성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1. 3. 11. ~ 2021. 3. 31.)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 평가서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모의”를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로, “사람에게 지원”을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를 “없다”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를 “신생아의 보호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관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등급”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대상자와의 관계			
출생아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통장사본 1부
------	---------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생 략)</p> <p>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u>부모의</u>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u>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u></p>	<p>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신생아의 출생 후</u> <u>부모의</u> ----- ----- ----- ----- ----- ----- ----- <u>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u> ----.</p>
<p>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 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u>100만원</u></p> <p>2.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u>50만원</u></p>	<p>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 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u>없으며</u>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p> <p>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u>신생아의 후견인</u>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p> <p>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u>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u>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p> <p>2. 통장사본</p> <p><신 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없다.</u></p> <p>제5조(지원신청) ① ----- ----- -----. 신생아의 보호자가 ----- -----.</p> <p>② ----- ----- ----- ----- ----- ----- 구비서류 ----- ----- ----- -----.</p> <p><삭 제></p> <p><삭 제></p> <p>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 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장애인가정의 <u>관내</u>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u>장애등급</u> <p>② (생 략)</p>	<p><u>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u> <u>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u> <u>록 안내하여야 한다.</u></p> <p>제6조(지원절차)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서울특별시 양천구</u> ----- 3. ----- 「<u>장애인</u> <u>복지법</u>」 제32조에 따른 <u>장애인</u> <u>등록 여부</u> <p>② (현행과 같음)</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유형 및 등급		전화번호		장애인유형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출생아	성명		출생일	출생아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유형 및 등급		전화번호		장애인유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통장사본 1부
<u>〈신 설〉</u>		<p><u>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u></p> <p><u>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u></p> <p><u>신청인:</u> _____ (서명 또는 인)</p> <p><u>*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u></p>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 9.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생 략)